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(대표발의: 강 동 오 의원)

의 안 번 호 ²⁴⁻⁴²

발의년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강동오, 고병준, 김승수, 신종갑,

오옥자, 이상원

1. 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
나.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

나.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3. 26. ~ 2024. 4. 2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맨발 걷기"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- 2. "맨발 보행로"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톳길 등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.
 - 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- 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- 다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경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
- 라.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맨발 보행로 조 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활성화 사업계획 수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 건기 활성화 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1.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
 - 2.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
 - 3.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계획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활성화 사업)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
 - 2.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· 보수
 - 3.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10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시 、 도 사무 | 시 · 군 · 자치구 사무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. 주민의 복지증 진에 관한 사무 | | |
| 마. 주민건강증 진사업 | 계획 수립 2)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 성、운영 | 1)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 계획 수립 2)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)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·운영 4)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·감독 5)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)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|

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2. 20.] [법률 제20325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(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(제12조제2항제1호)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| 작성자 이름 |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박수엽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연 락 처 | 02-3153-9557 | |